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실용신안공보(Y1)**

(51) Int. Cl.<sup>5</sup>  
B60R 21/11

(45) 공고일자 1990년 10월 10일  
(11) 공고번호 실 1990-0009406

(21) 출원번호	실 1988-0014027	(65) 공개번호	실 1990-0004825
(22) 출원일자	1988년 08월 27일	(43) 공개일자	1990년 03월 07일

(71) 출원인	김규홍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 2동 457-79
(72) 고안자	김규홍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 2동 457-79
(74) 대리인	김창구

**심사관 : 권종남 (책  
자공보 제1316호)**

**(54) 자동차 운전자의 얼굴보호구**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형세서**

[고안의 명칭]

자동차 운전자의 얼굴보호구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고안의 사시도.

제 2 도는 본 고안의 일부를 절결하여 사용하는 상태를 보인 측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보호테	1' : 상부테
1" : 하부체	2 : 지지판
3 : 지축	4 : 의자
5 : 베개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

본 고안은 자동차를 탄 사람의 이마와 턱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상부테와 하부테를 만곡되게 일체로 형성하여 보호테의 좌우 양단부족을 지지판에 상하로 재칠수 있게 유착하고 지지판을 자동차 의자의 상단부에 고정설치를 하여 운전자가 임의로 보호테를 얼굴 앞쪽으로 재치어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조건에서 차의 충돌시 머리가 앞쪽으로 재여지는 곳을 보호테가 억제시키어서 보호할 수 있게한 자동차 운전자의 얼굴보호구에 관한 것이다.

종래 자동차를 탈 때 교통사고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헬멧과 안전벨트가 사용되고 있으나 안전벨트는 차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누구나 차를 타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안전헬멧은 차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임의로 각자가 휴대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경주용 자동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승용차의 경우 안전 헬멧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불의한 차의 충돌사고의 발생시 몸이 안전벨트에 의하여 의자에 지탱하고 있어도 몸의 상체는 운동관성으로 심하게 앞쪽으로 엎어지면서 핸들이나 기울에 얼굴을 부딪치어 치명상을 입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고안은 이러한 종래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얼굴 주위를 여유공간을 두고 포위할 수 있는 크기로 이마와 턱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상부테와 하부테를 만곡되게 일체로 형성하여 보호테의 좌우 양단부를 좌우 지지판에 각각 상하로 재칠수 있게 유착하고 이 지지판을 자동차 의자의 상단부에 고정설치하여 항상 차에 비치되게 구성함으로서 자동차를 탄 운전자 또는 차의 앞좌석에 탄 사람이 보호테를 얼굴 앞쪽으로 재치고 운전을 하면 얼굴주위에 보호테가 둘러쳐 있어 안전벨트를 착용한 바른 운전자세에서는 얼굴을 정면 또는 좌우측을 아무런 부담없이 자유로히 주시하면서 운전할 수 있고 혹 운전중 불의하게 차가 충돌되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몸은 안전벨트에 의하여 의자에 지탱하고 있는 동시에 몸의 상

체가 앞쪽으로 굽혀지려할 때 보호테의 상부테와 하부테에 의하여 앞쪽으로 굽혀지는 것을 억제하게되어 머리나 얼굴이 차의핸들이나 기기에 부딪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보호테는 근접거리에서 얼굴과 접촉됨으로 얼굴에 는 아무런 충격을 주는 일이 없으며 보호테를 사용하지 않을때에는 의자 상부측 수직 방향으로 재쳐두고 필요한 경우에만 임의로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게 안출한 것으로 이를 도면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를 탄 운전자의 이마와 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테(1)의 상부테(1')와 하부 보호테(1")를 상하 간격을 두고 얼굴 주위에 여유공간을 두고 포위할 수 있는 크기로 만곡되게 일체로 형성하여 "ㄷ"자형으로 절곡형성하여서된 지지판(2)의 좌우 양측판(2')에 보호테(1)의 좌우 양단부로 지축(3)으로 유착하고 지지판(2)에 형성된 체결공(2")을 이용하여 자동차 의자(4)의 상단부측에 배개(5)의 지지간(5')을 끼워 고정설치하여서된 것이다.

도면중 미설명 부호 6, 6'는 완충재, 7은 안전 벨트이다.

이와 같이된 본 고안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자(4)의 수직상부로 세워두고 자동차를 탄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보호테를 사용코져할 경우에는 보호테(1)를 얼굴 앞쪽으로 재치어 상부테(1')와 하부테(1")가 각각 이마와 턱의 주위에 위치되게 하고 상부테(1')와 하부테(1")의 간격 사이의 틈으로 시어를 주시해서 안전벨트(7)를 착용한 조건에서 사용하면 운전중에는 보호테(1)의 중앙부에 얼굴이 위치되고 바른 자세에서는 얼굴과 보호테와 접촉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부담이나 시야 장애를 주는 일이 없이 평소와 동일하게 운전할 수 있고 물론 차를 타고 내릴 때 운전중이라도 몸을 굽힐 일이 있으면 보호테(1)를 위로 재치어두며 또한 보호테의 사용 중 불의하게 차의 충돌사고등이 발생하면 몸은 안전벨트에 의하여 의자에 지탱하고 있고 운전자의 얼굴은 보호테(1)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어서 운동관성으로 몸의 상체가 급격히 앞쪽으로 엎어지려할 때 얼굴에 근접된 보호테(1)와 상부테(1')와 하부테(1")가 이마와 턱을 각각 제지하여 상체의 굽혀짐을 억제하게 됨으로 얼굴이 자동차 핸들이나 차의 기울에 부딪치는 것을 방지하면서 보다 안전하게 교통사고로부터 몸, 특히 두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운전자의 얼굴 주위를 포위할 수 있는 크기로 보호테를 만곡되게 형성하여 지지판을 통하여 항상 자동차 의자의 상부에 고정설치하였기 때문에 안전벨트처럼 차의 비치물로 되어서 안전헬멧과 같이 차를 탈 때마다 일일이 휴대하거나 챙겨야 하는 번거로운 불편이 없고 보호테의 사용중에도 헬멧의 착용과 같은 머리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으며 보호테의 유착부에 적당한 마찰력을 형성하여 보호테의 재치는 각도를 임의로 조절하면서 누구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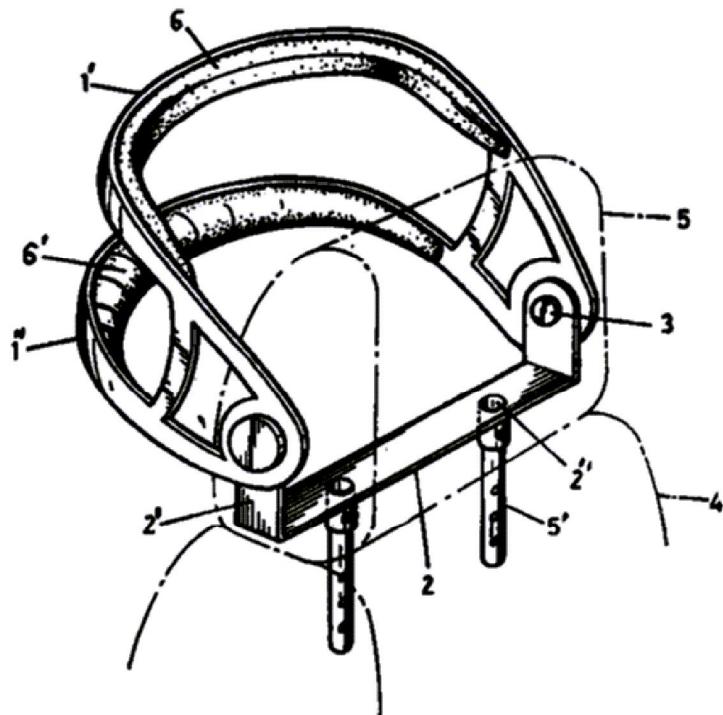
### (57) 청구의 범위

#### 청구항 1

자동차를 탄 운전자의 이마와 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테(1)의 상부테(1')와 하부테(1")를 상하 간격을 두고 얼굴주위에 여유공간을 두고 포위할 수 있는 크기로 만곡되게 일체로 형성하여 보호테(1)의 양단부를 지지판(2)에 유착시키어 자동차 의자(4)의 상단부에 고정설치하여서된 자동차 운전자 얼굴보호구.

#### 도면

##### 도면1



도면2

